

기업인 대상 최신 반부패 정책 자료집(2024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기업의 청렴·윤리 경영 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신 주요 반부패 정책 자료집을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 내용 (총 5건)

- ① "국민권익 보호와 반부패, 탄탄한 법률 지원이 함께 한다"('24.6.5.)
- ② "갑질 없는 청렴한 세상을 위해" 공직자 '갑질' 행동강령 위반 집중 신고 접수('24.5.31.)
- ③ '베르사유 궁전' 관광 취소 수수료를 나랏돈으로?...지방의회 '외유성 출장' 등 전수조사('24.6.10.)
- ④ "중양아시아와 동유럽에 K-청렴 DNA 심는다!"('24.6.10.)
- ⑤ "고양이에게 생선을"...감독기관 전직 고위공무원 앞세운 인건비 횡령 적발('24.6.12.)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정책정보 → 부패방지 자료실 → 청렴정책)

■ 문의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044-200-7619)

“국민권의 보호와 반부패, 탄탄한 법률 지원이 함께 한다”

- 국민권익위-대한법률구조공단, 오늘(5일) 업무협약 체결...고충민원
법률서비스 지원, 행정심판제도 활성화, 부패방지 위해 상호 협력 추진

(‘24. 6. 5.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 이하 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두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법률제도와 정책에서 소외된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우리사회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두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추진되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지난 1월에 취임하면서 ‘현장 중심의 권익구제’와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 구현’을 강조했다는데, 이번 협약은 그 연장선상에서 추진됐다.

앞으로 국민권익위와 공단은 업무 협약에 따라 ▲ 국민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생활법률 상담 및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원, ▲ 행정심판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구조 지원, ▲ 반부패 및 청렴교육을 위한 상호 협력을 중점 추진하고, 그 밖에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협의를 통해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 날 협약식 이후에는 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의 청렴특강도 진행됐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와 공단은 모두 사회적 약자의 곁에서, 국민의 편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기관인 만큼 두 기관의 협업이 앞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상승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 공단과 힘을 모아 현장을 기반으로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책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라고 강조했다.

“갑질 없는 청렴한 세상을 위해”

공직자 ‘갑질’ 행동강령 위반 집중신고 접수

-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갑질 행동강령 위반 집중신고기간('24.6.3.~7.31.) 운영
 - 누구든지 민원인·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공공계약 갑질, 감독기관의 부당요구를 신고할 수 있어, 다만 욕설, 인격모독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24. 5. 31.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 등 일선 공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무상 갑질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를 받는다.

누구든지 민원인, 부하직원, 계약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갑질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욕설, 폭언, 인격모독, 폭행,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갑질 유형	구체적인 행위 예시
민원인에 갑질	담당 공무원이 인·허가 등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 등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공공계약 갑질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공공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전가하거나, 공공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부하직원에 갑질	부하직원에게 직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갑질 유형	구체적인 행위 예시
소속·산하 기관에 갑질	공공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사적노무 요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계약, 민원인 등 직무관련자 또는 부하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피감기관에 부당한 요구	감독기관이 피감기관에게 출장·행사 등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금품·예우·의전을 요구하는 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는 국민권익위에 우편·방문 접수하거나,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을 통해 신고 관련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행동강령 위반 신고는 법령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신변보호 등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더욱 청렴한 공직 사회를 만들 것” 이라고 말했다.

‘베르사유 궁전’ 관광 취소 수수료를 나랏돈으로?...지방의회 ‘외유성 출장’ 등 전수조사

- 국민권익위, 6월부터 9월까지 243개 전체 지방의회 국외 출장 실태 전수 점검 실시
- 결과보고서 허위 작성, 계약·회계 법령 위반, 취소 수수료 과다 지급 등 포함

(‘24. 6. 10.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부터 9월까지 4개월 간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원의 국외 출장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9월 ‘지방의회가 국외 출장을 취소하면서 출장여비의 47%에 해당하는 취소 수수료를 여행사에 과다하게 지급하여 예산을 낭비했다’는 취지의 부패신고를 접수받았다.

국민권익위는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방의회도 국외 출장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3~4월 7개 지방의회를 선별하여 국외 출장 운영실태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취소 수수료 과다 지급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 운영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현지점검 시 주요 적발 사례 >

- ◇ A시의회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 가능 금액(2천만 원)을 초과한 4천여만 원에 여행사와 국외 출장 위탁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후, 28백여 만 원(예산 대비 약 70%)을 취소 수수료로 지급
- ◇ B시의회는 공무와 관련 없는 베르사유 궁전 입장권(445,170원)을 예매하였

다가 국외 출장이 취소되자 입장권 취소 수수료(445,170원)를 예산으로 지급

- ◇ C시의회는 국외 출장 7박 9일 중 4일을 공무와 관련 없는 외유성 관광 일정으로 편성
- ◇ D시의회는 출장자인 지방의원이 작성하여야 할 결과보고서를 여행사에 작성하도록 하고 비용(4,840,000원)을 예산으로 지급
- ◇ E시의회는 국외 출장을 준비하면서 현지에서 먹을 컵라면, 음료 등을 법인카드(273,600원)로 구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의 외유성 국외 출장 및 관련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실태점검은 9월까지 지방의원 국외 출장 관련 서면조사와 현지점검을 병행하고 ▲ 외유성 국외 출장 ▲ 국외 출장계획서·결과보고서 허위 작성 ▲ 회계·계약 법령 위반 ▲ 취소 수수료 과다 지급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다.

실태점검 결과 드러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국외 출장으로 인한 혈세 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동안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에 과도한 관광 일정이 포함되어 외유성·관광성 출장이라는 논란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출장 결과가 정책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없다는 지적 역시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방의회의 운영에 대한 부패인식·경험(청렴체감도)을 측정한 결과 ‘외유성 출장’ 항목을 가장 낮게 평가하는 등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는(68.5점)은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80.5점)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지방의원의 국외 출장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점검은 외유성 출장 등 부적절한 국외 출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진행되는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점검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외유성 국외 출장 등 부적절한 예산 집행 관행이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에 K-청렴 DNA 심는다!”

- 국민권익위, 오늘(10일)부터 열흘간 중앙아시아·동유럽 3개국 대상 반부패 연수
-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공무원에게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제도, 청렴포털 등 한국의 우수 반부패 정책·시스템 전수

(‘24. 6. 10.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청렴포털 등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과 제도가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등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의 공무원들에게 전수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10일부터 10일간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러시아어 과정을 운영했다.

올해 연수에는 아제르바이잔 대검찰청 및 사법법무자문위원회, 우즈베키스탄 반부패청, 타지키스탄 금융통제부패방지청 등3개국 반부패 관계기관 공무원 총 15명이 참여했다.

이번 연수는 국제사회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부패영향평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 주요 반부패 제도와 ▲디지털 부패방지 시스템 ▲부패사건 수사 기법 ▲반부패 국제동향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특히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시스템, ‘나라장터’ 전자조달 시스템, 공직윤리 시스템 등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국의 주요 전자정부 시스템을 소개하고, 부패사건 수사과정에 활용되는 디지털 포렌식 등 최첨단 수사기법과 국제적으로 관심이 큰 자금세탁 방지 제도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매년 세계 각국 공무원들의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과정을 운영해왔다.

공공기관 청렴도평가가 2012년 유엔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하는 등 국민권익위의 반부패 정책이 국제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어, 반부패 연수과정에 대한 교육수요도 꾸준히 증가해 그동안 70개국 368명의 외국 공직자들이 연수에 참여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수요 증가에 따라 영어 연수 과정 외에 중앙아시아와 동유럽 국가들을 위한 러시아어 과정을 2020년에 신설했다. 또한, 2023년에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한 불어 과정을 신설한 데 이어, 오는 9월에는 중남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스페인어 연수 과정도 개설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한 한국의 반부패 정책 성과와 경험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등 우수한 K-청렴정책뿐만 아니라 청렴 포털 등 앞선 디지털 반부패 시스템을 세계 여러 나라와 공유하여 국가 청렴도를 높이고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하겠다” 라고 강조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감독기관 전직 고위공무원 앞세운 인건비 횡령 적발

- 국민권익위, 연구원 허위 등록 및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 등 정부지원금 횡령 적발... 약 127억원의 정부지원금 국고 환수 및 관련자 징계
- 바우처 부정수급 실태조사 결과, 약 222억원 제재부가금 미부과 적발
- 올해 7월 말까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신고자 신분 철저히 보장, 최대 30억원 보상금 지급

(‘24. 6. 12.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정부지원금*을 횡령한 정부 지원 협회와 업체를 적발하여 부당하게 낭비된 예산 약 127억 원을 환수하고 관련자들을 중징계했다고 밝혔다.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

국민권익위는 환경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A 협회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약 39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가로챈 사실을 확인했다.

A 협회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소속 직원에게 과도한 인건비를 지급한 후 협회가 정한 월 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을 별도 계좌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약 27억 원을 빼돌렸다.

직원들의 급여내역서에 “추가 지급된 돈을 되돌려 달라”는 협회의 안내문구가 적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은 이를 알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A협회는 또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직원 64명을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여 인건비 약 11억 8천만 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이 과정에서 인건비 횡령 등에 연루된 A 협회 상근 부회장이 감독기관의 고위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부회장을 포함한 관련자 6명을 징계했다.

또 다른 사례로 B업체의 경우, 물품 가격을 부풀리거나 실제 구입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의 수법으로 약 34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횡령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B업체가 횡령한 연구개발비 및 제재부가금 약 64억 원을 포함한 총 98억여 원을 국고로 환수조치하였고, 이를 주도한 이사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부정수급 취약분야를 선정하여 각 기관의 제재부가금 부과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작년 10월부터 올 4월까지 바우처 서비스 분야를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2020년 이후 바우처 관련 부정수급 적발은 약 28,000건이었으며, 64개 지자체에서 약 222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재 부가금을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

제재조치가 미흡한 기관은 지역별로 ▲경기도가 75억 원(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3건, 24억 6천만 원), ▲충남(19건 22억 3천만 원), ▲부산(11건, 18억 원), ▲서울(11건, 14억 원) 순이었다.

사업별로는 ▲장애인 활동지원(77건, 151억 원)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37건, 60억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3건, 2억 원) 순이었다.

〈 바우처 부정수급 제재조치 미흡 사례 〉

- ▲ 바우처 이용자의 카드를 보관하면서 4억 9천만 원을 허위 결제하였으나 제재부가금 약 25억 원 부과 누락
- ▲ 활동지원사가 이용자의 보호자와 담합하여 서비스 제공없이 2억 6천만 원을 허위로 결제하였으나 제재부가금 약 13억 원 부과 누락
- ▲ 다른 바우처를 이용하는 시간에 허위로 타 서비스 비용을 2천 3백만 원을 결제하였으나 제재부가금 약 12억 원 부과 누락
- ▲ 서비스 제공 시간을 부풀려서 1억 6천만 원을 부정수급하였으나 제재부가금 약 5억 원 부과 누락

또한, 국민권익위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5월 부터 7월 말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자는 신고 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의 신분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 등이 발생하면 기여도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나랏돈은 국민의 혈세 인 만큼 한 푼도 헛되게 사용하면 안된다” 라며, “부정수급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연구개발비 등 부정수급 빈발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협회 용역사업비 횡령



급여명세서

성명
입사일자

(단위: 원)

급여내역		세액 및 공제내역	
내역	금액	내역	금액
기본급		국민연금	
사건외수당		건강보험	
직책/기술수당		장기요양보험	
제직당첨비		고용보험	
퇴근보조비		소득세	
세액		차감소득세	
의사봉역외수당			
정려금			
합계		합계	
		급여 환급액	
실 지급액		비고	

2019년도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어 7월부터 국민연금보험료에 반영되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 환급액은 용역사업으로 인한 추가 차감된 금액이므로
발주할 때내로 해당금액을 이계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한국○○협회 0234-687491000 | 010-9858-XXXX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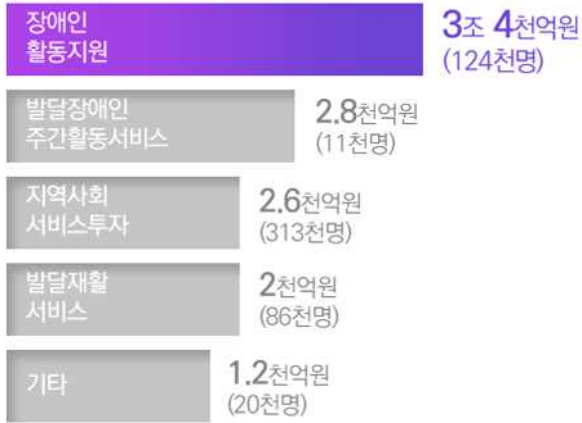
직원에게 인건비 과다 지급 후 별도 계좌로 27억 원을 되돌려 받은
사업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여 12억 원을 청구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물품 가격을 부풀리거나 실제 구입하지 않은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34억원의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

세부사업별 예산(이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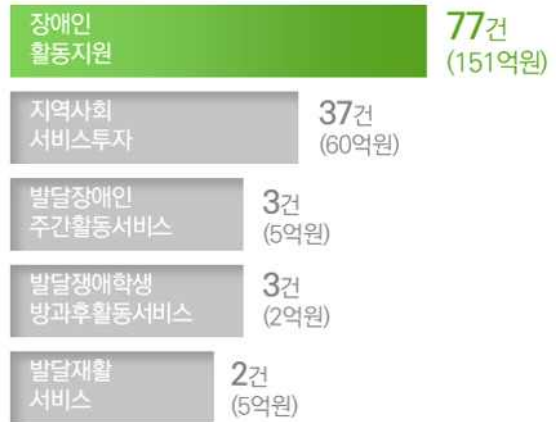
부정청구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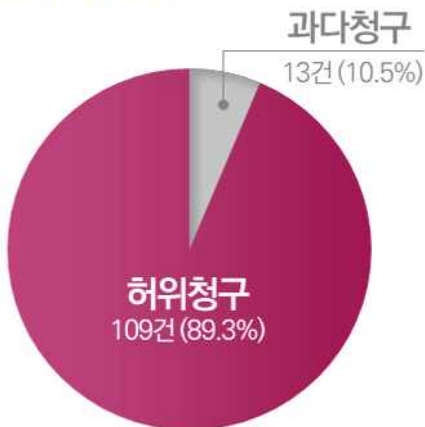
지역별



세부사업별



부정청구 유형별



제재조치 미흡기관



붙임 3

바우처 부정수급 사례

□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를 소지·보관한 뒤 서비스 제공없이 허위결제

《주요 사례》

- ▶ 전남 화순 지역에 있는 ○○자립생활센터 소속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은 이용자의 카드를 소지한 채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서비스 제공없이 허위 결제(부정수급액 : 4억 9,000여만 원)
⇒ 허위청구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함에도 누락
- ▶ 전북 군산 지역 ○○장애인협회에 소속된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은 이용자의 보호자와 담합한 후 2020년 7월부터 약 2년간 서비스 제공없이 허위 결제하고 이용자의 보호자 등과 현금 분취(分取)(부정수급액 : 2억 6,000여만 원)
⇒ 허위청구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함에도 누락

□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시간, 장소 등에 대한 허위결제

《주요 사례》

- ▶ [시간] 부산 연제구에 있는 ○○자립생활센터는 2020년 2월부터 약 2년간 이용자가 다른 바우처를 이용하는 시간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비용을 결제(부정수급액 : 2,300여만 원)
⇒ 허위청구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함에도 누락
- ▶ [장소] 경기 의정부에서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을 수행하는 ○○는 2021년 부터 약 1년간 관내 등록된 장소가 아닌 타 지자체 소재 제공기관에 방문하여 정서발달지원서비스 600여 건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결제(부정수급액 : 1,300여만 원)
⇒ 허위청구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함에도 누락

□ 서비스 대상 규모를 초과하여 허위·과다결제

《주요 사례》

- ▶ 충남 부여 지역에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사업을 하는 ○○은 2021년 1:1 기준을 미준수하고 집단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제공기록지에는 제공시간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부정수급액 : 1억 6,500여만 원)
⇒ 과다청구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3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함에도 누락
- ▶ 경기 고양시에 있는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업체 ○○발달센터에서는 2022년 9월부터 6개월간 기준 집단규모(1:2~4)를 초과하여(1:4~6) 서비스 제공 후 비용을 결제(부정수급액 : 2,000여만 원)
⇒ 과다청구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3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함에도 누락

붙임 4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

- 운영기간 : 2024. 5. 1. ~ 7. 31. (3개월)
- 신고대상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5대 빈발분야

5대 빈발분야 부정청구 대상 (예시)

① 산업자원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비) 이미 개발이 완료된 기술을 새로 개발하는 것으로 속여 연구 개발비 부정수급 • (중소기업 역량강화사업) 보조금을 받아 개인적 목적으로 유용하는 등 목적 외로 사용하여 부정수급
② 보건복지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허위 교사 등록 및 어린이집 식재료비·특별활동비 등을 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 (요양급여) 종사자 입·퇴사일 허위 등록 및 근로시간을 부풀려 부당하게 수당 청구, 수가를 조작하여 요양급여 부정청구 •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등에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한 것처럼 속여 부정수급
③ 고용노동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사업) 재직 직원을 신규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속여 지원금을 부정수급 • (실업급여) 취업사실 미신고 또는 실업사유 허위 작성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
④ 농림수산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직불금) 자기 소유 농지를 타인에게 위탁하고 직접 농사를 짓는 것처럼 허위서류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정수급 • (농업보조금)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지정 작물을 수확하지 않고, 다른 작물을 심어 목적 외로 사용하여 부정수급
⑤ 환경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 자동차 보조금) 전기자동차 계약서에 기재된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납부한 것처럼 속여 부정수급 • (전기 이륜차 보조금) 전기이륜차 주요 부품이 인증 당시와 달라졌음에도 변경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보조금 부정수급

※ 이를 포함하여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협회 등의 보조금 허위청구, 목적외 사용 등

- 신고안내
 -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번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번
 - 신고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 팩스 : (044) 200-7971
- ※ 우편·팩스를 통한 신고 시,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신고접수 요망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감독기관 등에 이첩·송부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최대 30억)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최대 5억)